

가정상담

11

2018

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NEWS LETTER • ISSN1227-7568

통권 423호

법률구조를 통한
법률복지사회 구현
우리 사회의
모든 가정과 함께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SNS

트위터▷ <http://www.twitter.com/LegalAidCente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korealawhome>



상담소는 지난 10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진선미 의원실과 공동으로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압류금지채권 규정의 보완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관련기사 27면)



본소는 지난 10월 27일부터 28일까지 1박 2일 동안 양재동 더케이서울호텔에서 제46회, "나, 너, 그리고 우리 - 행복찾기 부부캠프"를 진행하였다. (관련내용 20면)



표지글씨 | 박병호 서울대 명예교수

표지그림 | 이현혜 평생회원
〈부들레아〉

- 4 • 이 달의 메시지
- 6 • 특집 | 양육비 심포지엄 ❶
- 18 • 기획연재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00년을 향해 ❸
- 20 • 가정폭력상담실
- 24 • 인터넷 상담
- 25 • 좋은 책
청춘의 사진
- 26 • 결혼과 인생(189) 만화일기
우리 식구 _ 장차현실
- 27 • 상담소 소식
- 30 • 지부 소식
- 32 • 상담통계
- 33 • 백인변호사단 소송구조

이 달의 메시지



이 시대 우리 사회의 폭력성에 대해 경계를 -

.....
양극화의 심화와 무한경쟁 시대를 다시 생각하며



곽 배 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사람 사는 일은 동서고금 대개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도 보편타당한 윤리규범이 있고 보통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지만 어느 시대에도 윤리와 도덕을 벗어나는 범죄와 폭력은 있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신이 창조한 아담의 아들로, 사람이 낳은 최초의 사람 카인은 또한 최초의 살인자이기도 했습니다. 그 살인의 대상은 동생인 아벨이었으니 성경에서 언급하는 인류 최초의 범죄는 바로 형제살해였던 것입니다. 4대 성인의 한 사람인 공자 시대에도 큰 도적인 도척이 있어 혼란스러웠다고 하니, 전쟁 말고도 인류의 역사 자체가 범죄와 폭력 사이에서 윤리와 도덕을 지키며 사람다움에 대해 그 진정성을 찾아가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폭력과 범죄가 있어 왔지만 최근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폭력 특히 가정폭력은 일찍은 그 예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올해는 가정폭력을 범죄로 규정하고 법과 제도 안에서 본격적으로 가정폭력을 다루기 시작한 지 2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식구끼리, 가장이, 부모가 그럴 수도 있는 일이라 가정의 담 안에서 공공연하게 행해지던 가정폭력에 대해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폭력일 뿐이며 누구도 폭력의 피해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폭

력은 어떤 경우에서도 결코 용납될 수 없고, 문제해결의 수단이 될 수 없다는 대원칙이 사회에 천명되었으나 20년이 지난 지금도 폭력 없는 가정, 폭력 없는 사회의 실현이란 사실 요원해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원칙의 실현을 위해 그저 부단히 노력해야 하며 폭력 없는 사회는 어쩌면 유토피아에서나 가능할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칙과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는 삶, 노력하는 사회가 현실에서는 최선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근 우리 사회의 폭력과 범죄는 지극히 우려할 상황이라고 봅니다. ‘안전이별’이라는 용어가 일반화될 정도로 사귀다 헤어지거나 이혼을 선택할 경우 목숨을 담보로 하거나 내 사생활이 인터넷 세상에 모조리 드러날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시달려야 합니다. 뿐 만 아니라 일상의 사소한 다툼이 죽음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일면식도 없는 관계에서 그저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의 희생양이 되기도 합니다.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이혼했지만 끝내 그 폭력에 희생된 엄마를 둔 딸들이 어떤 이유로든 아버지가 감형되어서는 안 된다면 국민청원을 했다는 소식은 듣는 이로 하여금 형언할 수 없는 복잡한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오죽하면 아버지에 대해 그 자녀들이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저 피해자 자녀들의 삶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생각해 보면 이러한 강력범죄와 폭력이 빈번한 이유는 아마도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 그리고 무한 경쟁 시대 속에서 소외되고 고립된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서 찾아야 할지 모릅니다.

특히 최근 통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5,60대 남성 일인가구의 증가는 또 다른 의미에서 부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되는 핵가족 시대와 동시에 고령화 사회와 맞물린 노인 독거가구의 증가로 이어지면서 새로운 가족관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보면 5,60대 노인 중에서도 남성 노인의 일인가구 형성은 그들 스스로 준비되고 원해서 이루어 졌다 라기 보다는 타의에 의해서 내몰려진 상황이 많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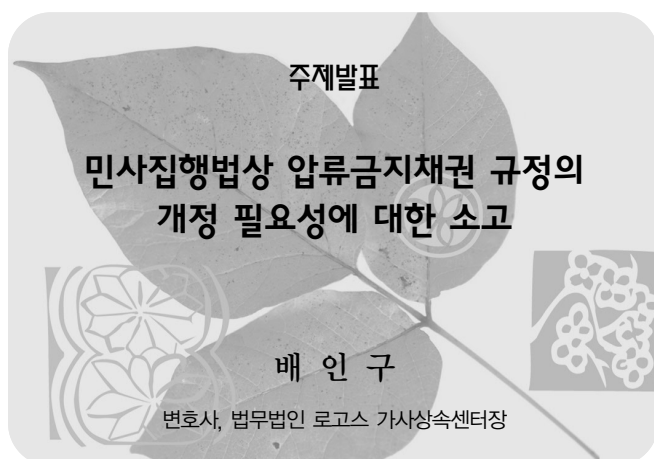
경제적으로 어렵고 심리적, 정서적 불안정 상태에서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소외되고 배척당한 이들이 어쩔 수 없이 독거 가구 형태를 띠게 되었다면 이러한 상황이야말로 범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번에 발생한 일련의 가정 관련 강력범죄 사건을 보더라도 이것을 단순히 가정폭력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폭력범죄로서는 물론 가족문제와 관련 가족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최근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가족관계의 새로운 변화들을 가족정책의 내용으로 받아들여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 하에 해결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 편으로는 우리 사회가 가정과 가족을 근간으로 하는 로드맵에서 그 가족과 가정이라는 개념과 정체성을 새롭게 그려야 하는 시기가 빠르게 도래하고 있음도 동시에 깨달아야 할 때라고 봅니다.

강력범죄의 증가와 천민자본주의, 가족관계의 급격한 변화는 별개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 갈등의 근원을 살펴보면 사실 모두 깊이 있게 얽혀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자본주의는 투기를 부채질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며,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이러한 사회에서 교육은 민주적이고 평등하게 다양하고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무한경쟁을 부추길 따름입니다. 초등학생의 장래희망이 ‘정직원’이거나 젊은이들 다수가 ‘공무원’ 시험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이 사회에 아름다운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궁극적으로 어느 누구도 제대로 된 삶을 영위할 수 없으며 그것은 곧 이탈과 범죄로 나타나게 된다고 봅니다.

아름답게 저물어가는 계절에 암울한 주제의 이야기를 해 보는 것은 이러한 위기 신호를 놓치지 말아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어쩌면 우리 사회의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는 지도 모른다는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압류금지 채권 규정의 보완과 개선은 물론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다양한 제도 모색해야



I. 들어가는 말

2012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족 중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한 비율은 약 83%, 양육비 청구소송 경험에 있는 경우는 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육비 지급판결 후, 안정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는 비율은 2010년 26.3%였지만(양육비 이행실태조사), 2012년

24.3%(한부모가족실태조사)로 악화되었다.

비양육부로부터 양육비 이행확보 방안이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가사소송법상 간접적 집행 확보를 위한 이행명령 및 이행명령 위반시에 따르는 감치, 과태료 제재 등의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이 미미하였다. 이에 2009년 가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 제도를 도입하였고, 2015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면서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개원하였다.

양육부모가 가장 쉽게 양육비채권을 집행하는 방법은 양육비채무자인 비양육부모의 급여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신청하거나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채권이

* 본소는 지난 10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진선미 의원실과 공동으로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압류금지채권 규정의 보완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2회에 걸쳐 심포지엄의 주제발표와 토론내용을 요약하여 게재한다. 관련기사 27면 참조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에 해당되면 실무상 그 집행을 할 수 없다. 관련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다음과 같이 모색할 수 있다.

II.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란 양육비채무자가 급여소득자인 경우에, 양육비채권자가 양육비채무자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직접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즉 장래의 정기금 양육비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장래의 정기적 급여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과를 인정하는 것이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¹⁾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 중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에 관한 규정, 성질에 반하지 않은 범위 내의 민사집행규칙이 적용되는데, 현행법상 최저 150만 원에서 300만 원²⁾까지의 금액은 압류할 수 없고, 직접지급명령도 할 수 없게 된다. 예를 들어 150만 원의 급여를 받는 비양육 부모와 150만 원의 수입으로 초등학교 자녀 1 명을 양육하는 양육부모가 있고, 가정법원이 양육비산정기준표 등을 참작하여 비양육부모에게 매월 약 45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한 경우에 양육비채무자가 그 이행을 계속 하지 않아도 직접 지급을 받기 어렵다. 150만 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되기 때문이다. 임금채권에 대해 압류상한선이 있다는 것은 그 근로자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생활하는 가족까지 고려된 것이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임금채권의 직접, 전액 지급원칙에 대한 중요한 예외이다. 이런 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일정 금액의 급여 채권에 대해 전액까지 압류가 금지된다는 것은,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는 결과가 되어 문제라고 할 것이다.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양육비 채권에 대해서는 압류를 일부 허용하는 예외 인정이 필요하다.

III. 헌법재판소 2018. 7. 26. 선고 2016헌마260 결정

한편 최근 퇴직공무원으로서 연금을 수령하고 있으면서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채무자의 연금채권에 대해 매 월 70만 원의 양육비채권이 있는 양육비채권자가 공무원연금법 제32조 규정으로 인하여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는 청구하였으나 기각(합헌 4인 : 위헌 5인)된 사례가 있다.³⁾

주요내용으로는 압류제한조항이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즉 수급권자 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에 해당하는 액수로 한정하여 압류를 제한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조항은 수급권자 및 그와 같이 사는 가족의 최소한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금액에 대한 압류를 금지함으로써 수급권자 및 그와 같이 사는 가족의 기본적인 생계가 가능하도록 하여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위 금액에 한정하여 양육비채권자의 집행을 금지한다고 하더라도 법익균형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압류제한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다만 반대의견에서는 압류금지조항 중 집행채권이 양육비채권인 경우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의 자녀양육권과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였다.

IV. 압류금지채권 규정의 개정 제안

임금채권에 대해 일정 부분 압류를 금지하는 입법 목적을 고려하고, 양육비 채권의 특수성을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개정안을 제시한다. 양육비 채권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단서 규정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

1) 가사재판연구(2017), 사법연수원, 32쪽

2) 급여가 300만 원 이상인 경우 압류가 금지되는 범위가 늘어날 수 있지만 간단하게 300만 원이라고 가정한다.

3) 헌법재판소 2018. 7. 26. 선고 2016헌마260 결정

는 방식이다.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되, 위 제1호에서 정한 청구권에 기한 압류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양육비채권으로 압류하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도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어 동일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 조항에도 단서의 효력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것을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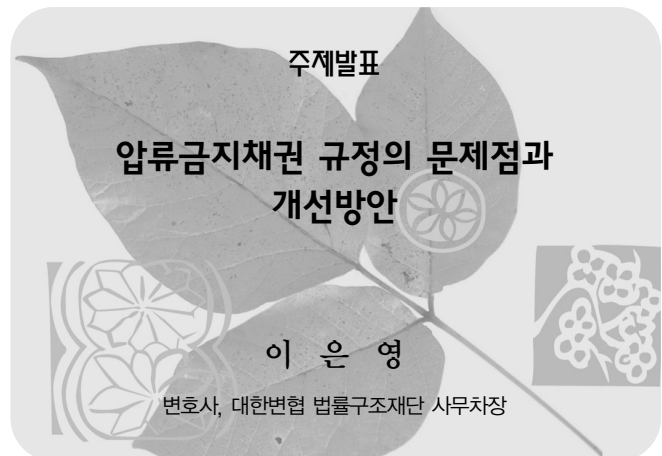
압류금지규정을 살펴보면 임금 등 채권의 1/2 부분을 압류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다. 그 규정의 단서 조항이 임금 전부의 압류까지 금지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단서의 효력을 제한하는 방식, 즉 양육비 채권이 임금 등 채권의 1/2을 상회하는 부분만 압류한다면 이것을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면, 원래 임금 등 채권의 압류금지 목적은 임금 등 채권자의 미성년자녀의 생존까지 고려한 것이다.

이런 방식의 또 다른 장점은 임금 등 채권의 1/2까지 압류하되, 만약 비양육부모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어 압류범위를 축소하여야 할 경우 양육비 채무자가 그 사정을 소명하여 압류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다.

V. 마치며

압류금지채권의 규정 중 양육비 채권의 특수성이 보다 고려되어야 하는 이유에는 양육비가 자녀의 복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비용이고, 크게는 양육비채무자의 필요생계비의 범위 안에 포함될 수 있는 비용인 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효력이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의 효력과 같기 때문에 직접지급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 다른 채권자의 압류와 경합된다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활용할 수 없게 되는 점,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우선순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이 있다.

이혼 전후의 양육환경이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양육비가 정해지더라도 양육비가 원활하게 지급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이를 위해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여러 제도의 도입에 대한 모색이 요구된다.



I. 서론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결국 양육비채무자가 양육비 이행확보제도를 통해서도 양

4) 일본의 경우, 양육비채권의 집행과 관련하여서는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를 더 좁혀서 양육비 집행을 실효성을 도모하고 있다. 즉 양육비 채권의 경우에는 급료채권 등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는 범위가, 3/4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1/2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감축되고, 다만, 사정에 따라 재판소가 신청에 의하여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고도 한다(일본 민사집행법 제153조).

육비를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해 양육비를 지급 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외국의 양육비 이행확보제도를 살펴보고, 2015년 논의되었던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검토한 뒤 현행법상의 압류금지 채권 규정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도록 한다.

II. 외국의 양육비 이행확보제도에 관한 입법례

외국의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제도는 (1) 양육비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행정기관이 담당하면서 필요시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고 양육비 지급 의무자로부터 추심하는 체제(영국, 미국)와 (2) 양육비 이행에 관한 사항을 법원의 관장사항으로 하여 채권자가 의무자에게 직접 이행을 받아 이를 양육비에 충당하도록 하는 체제(독일, 일본)로 구별할 수 있다.

국가별 주요 입법례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국의 경우,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양육비를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행정기관인 CSA(Child Support Agency)가 결정한 양육비를 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 양육하는 부모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양육비 지급이 원만하지 않는 경우, CSA는 양육비 지급 의무자의 고용주로부터 임금 직접 공제, 재산 추심 및 매각, 6주간 감치, 2년간 운전면허 취득 및 보유 금지, 여권발급금지 등의 조치를 취한다.

미국의 경우, 임금이나 기타 소득에서 공제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급여공제제도가 있다. 개인책임 및 취업기회조정법에 따라 각 주는 양육비의 수령과 분배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을 설치하여 법정에서의 법관에 의한 프로세스를 요하지 않고, 행정적인 프로세스에 의하여 양육비 명령이 발부된다. 또한 양육비 명령을 비양육부모가 따르지 않을 경우 양육부모가 비양육부모의 동산이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비점유적 선취특권을 인정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비양육친이 부양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주정부가 양육친에게 일정한 액수까지 부양료를 선지급하도록 하는 양육비선급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유럽

의 많은 국가에서 이를 시행 중이다. 또한 양육비선급법을 통하여 양육비선급을 받은 자녀가 비양육친에 대하여 부양료청구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 자녀의 부양료채권은 주정부에 이전하여 아동복지기관 등에서 부양의무자의 수입에 관한 정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가 12세에 달할 때까지 최장 72개월 동안 선급된다. 이 기간이 경과한 후에 다시 재청구를 할 경우 역시 3년의 기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일본의 경우, 계속적으로 양육비가 제때 지급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으로 채무자의 임금이나 퇴직금 등에 대해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 4분의 3까지 압류를 금지하고 있으나 양육비 등의 채권에 대해서는 2분의 1까지 압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III.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은 급여채권의 경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의 단서에서 압류금지 최저금액과 압류금지 최고금액을 정하고 있다. 제4호 단서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월 150만원이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또한 제4호 단서의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월 금 300만 원 이상으로서 위 「금 300만 원」과 「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압류금지 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위 금 300만 원을 뺀 금액의 2분의 1」을 말한다(시행령 4조).

2015년 발의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제246조에서 채권자가 양육비 확보를 위한 것임을 소명한 경우에 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압류금지채권 중 급여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신중한 논의는 필요하겠지만 양육비채권은 자녀의 양육을 위한 필수적 경비로 양육비채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따라서 현행 민사집행법상 양육비채권을 일반채권과 구별 없이 압류금지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점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하다. 특히, 압류금지채권 중에서 급여 및 퇴직금채권 뿐만 아니라 양육비채무자가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자가 아닌 경우의 양육비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에 관하여 양육비 확보를 위한 것임을 소명한 경우에는 압류명령을 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8호).

IV. 현행 압류금지채권 규정의 문제점

양육비채권 보호에 있어 현행 압류금지채권 규정의 문제점으로는 (1)압류금지채권 규정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점, (2)양육비채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희생시키는 점, (3)양육비채무자를 지나치게 보호하는 점 등이다. 특히 압류금지채권은 양육비채권을 일반채권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양육비채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양육비가 산정되고 양육비채무자의 사정으로 양육비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양육비채무자는 채무에 관해 예측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양육비채권 보호의 필요성을 크게 인정하지 않는 점은 부당하다.

특히 양육비채권은 자녀의 양육을 위한 필수적인 경비로, 양육비를 산정할 때 양육비채무자의 소득이 양육비 산정 기준이었기 때문에,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채권 등'을 압류

금지채권 규정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 또한 양육비 이행확보제도를 통해 미지급 양육비를 받을 수도 있지만, 이러한 강제수단에도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양육비채무자가 양육비를 미지급할 경우, '급여채권 등'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통해 미지급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민사집행법 규정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V. 현행 압류금지채권 규정의 개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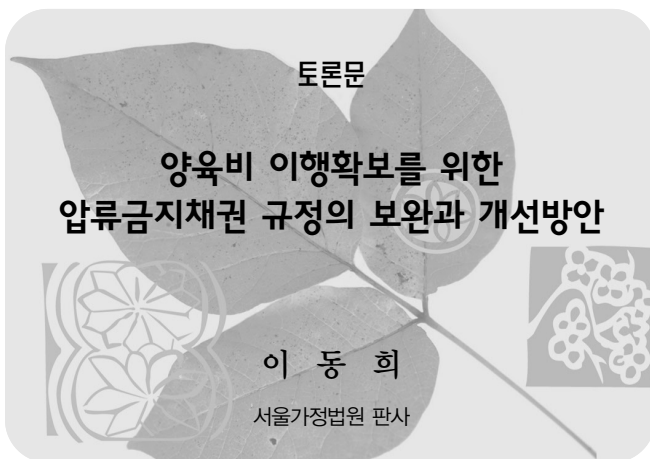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영국과 미국의 양육비 이행확보제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정기관이 양육비채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이겠지만, 이는 예산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운전면허 정지·취소의 도입 등 효과적인 양육비 이행확보제도를 신설하여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양육비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결국엔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주목하여 압류금지채권 규정에 대한 개정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양육비채권은 양육비채권자가 자녀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비용으로 양육비채권을 보호할 필요성은 크다 할 것이다. 압류금지채권 규정의 실질적인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현행 압류금지채권 규정은 지나치게

현행	개정안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 ~ ③ (생략) 〈신설〉 ③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에는 제196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채권자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육비 확보를 위한 것임을 소명한 경우에는 제1항 제4호, 제5호 및 제8호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 —————.

양육비채무자를 보호하고 양육비채권자와 자녀를 희생하는 규정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급여채권 등’에 대하여는 양육비 확보를 위한 것임을 소명한 경우 압류명령을 하도록 규정하여 양육비채권의 실질적인 확보를 통해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부부가 이혼하여 혼인관계가 종료된 후에 그 사이에 있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역할을 계속하고 있는지 여부는, 그것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할 때, 그 자녀의 개인적인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하는 부모에게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분담하게 하고, 특히 그 의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하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혼 후에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⁵⁾뿐만 아니라 직접 양육하는 부모 역시 상대방에 대한 분노, 자녀에 대한

미안함, 무기력 같은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과 현재 상황의 어려움 등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법률적, 정책적으로 사회가 적절하게 개입하여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한 부모가 정기적인 급료를 얻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양육비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구제 방법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주제발표에서 언급된 것처럼, 급료는 채무자 본인 및 그 현재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기초가 되므로, 급료에 대한 채권자들의 권리행사를 제한함으로써 채무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고 근로 의욕을 유지시켜 인간다운 삶을 가능하게 하려는 사회정책적 고려에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등에서 일정 부분의 압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육비채권은 원래 압류금지제도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채권이므로,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양육비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급료채권에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와 양육대상인 자녀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어느 법익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할 것인가 하는 것은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이은영 변호사님께서서는 압류금지채권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제3항⁶⁾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육비 확보를 위한 것임을 소명한 경우에는 제1항 제4호, 제5호 및 제8호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로 신설하는 내용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5) 많은 경우에 ‘비양육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직접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것이 아닐 뿐, 양육비의 지급이나 면접교섭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자녀의 육체적, 정서적 성장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양육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그러한 용어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있고, 경정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6) §246 ③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발표하셨고, 그 취지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토론자로서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발표안과 유사한 내용의 법률개정안⁷⁾에 대한 검토보고서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위와 같이 민사집행법을 개정하게 될 경우, ‘급료 대부분’에 대한 압류가 ‘의무적’으로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채무자와 그의 현재 가족의 생계는 전혀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또다른 비극이 발생할 우려가 매우 높고, 압류금지에 관한 원칙과 예외가 사실상 뒤바뀌는 결과가 됩니다.

더욱이 현재 상태에서도 채무자가 이직, 퇴사 후 재입사 등의 방법으로 급료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발표안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살기 위해’ 회피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수밖에 없게 만들 것입니다.

만일 위와 같이 된다면, 양육비 중 극히 일부를 지급받기 위한 조치가 오히려 채무자로 하여금 급료를 포기하게 하거나 적극적으로 회피하게 함으로써 양육비의 지속적인 추심을 불가능하게 하는, 즉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발표자께서는 발표안만으로도 충분히 위와 같은 결과를 방지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보완책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배인구 변호사님께서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의 단서⁹⁾를 “다만, 그 금액이 …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되, 위 제1호에서 정한 청구권에 기한 압류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양육비채권의 경우

에는 급료에 대한 압류금지의 원칙(1/2)으로 돌아가자는 취지로 발표하셨습니다.

급료가 300만 원 이상인 채무자의 경우에는 현재 제4호 단서의 규정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많은 사례는 채무자의 급료가 300만 원 이하로써, 최저생계비¹⁰⁾ 이상 압류를 하면 채무자나 그의 현재 가족이 사람으로서의 최소한을 보장받지 못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양육비채권이 미성년 자녀의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양육비를 부담하는 채무자와 그의 현재 가족의 인간이기 위한 최소한의 생활이 함께 망가져도 된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위험한 것이 아닐는지요. 그것은 함께 죽는 것이거나 ‘아랫돌 빼서 윗돌 끼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닌가 생각됩니다.

만일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자녀의 생계가 위협에 처하게 될 위험이 있다면, 그 부모는 양육능력이 없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혼한 상대방으로부터 단돈 몇 만 원 내지 몇 십만 원을 받아 그 어려운 생계를 계속 유지하게 하게 할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추가적인 보조금이나 지원금 등으로 생활을 개선하고 보육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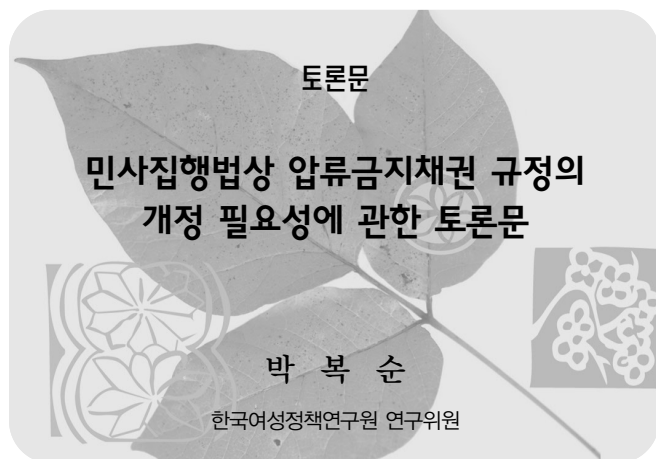
발표자께서는 300만 원 이하, 극단적으로는 150만 원 이하의 급료를 받는 채무자의 경우에도 위 개정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쭙습니다.

7) 2015. 10. 27. 제안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제17394호)

8) 2015. 12. 각주 3)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강남일)

9) 2005. 1. 27. 개정된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단서규정 신설.

10)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8년 최저생계비는 1인가구 약 100만 원, 2인가구 약 170만 원입니다.



1. 주제발표의 취지

김은영 변호사님은 ‘압류금지채권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다루시면서 영국, 미국, 독일, 일본 등 외국의 양육비 이행확보제도에 관한 입법례를 각국의 특징점을 중심으로 설명해주시고, 우리와 법체계가 크게 다르지 않은 일본에서 임금 등에 대하여 양육비채권을 압류할 수 있는 범위를 일반채권과 다르게 규정한 점에 주목해야 함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주제와 관련은 없지만 독일의 가장 특징점인 양육비선지급과 관련하여 2017년 법 개정으로 12세에 달할 때까지 최장 72개월 동안 선급하는 내용이 72개월이라는 최장 지급기간은 삭제되고, 일정 요건 하에서는 18세에 달할 때까지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김은영 변호사님은 현행 압류금지채권 규정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4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육비채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희생시키면서 양육비채무자의 지나치게 보호하여 압류금지채권 규정의 취지¹¹⁾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양육비채권은 보호 필요성이 크고, 양육비채무

자는 그의 소득을 기준으로 양육비가 산정되고 그의 사정으로 양육비 변동도 가능하여 급여채권 등에 대하여 제한 없이 압류하여도 양육비채무자에게 큰 침해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채권과 일반채권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민사집행법 제246조제3항에 근거한 압류명령을 통해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범위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으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개별적인 특수상황을 양육비 채권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양육비채권을 보유한다고 해서 확실히 양육비 채권이 확보되는 상황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네 번째는 양육비 채무의 불이행 시 제재를 통하여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지만, 제재를 받고서도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결국은 강제집행을 통해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지급양육비를 실질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압류금지채권 규정의 개선방안은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개정안으로 2015년 한차례 논의되었던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유사한 법안을 제안하고 계십니다. 즉, 채권자가 양육비 확보를 위한 것임을 소명한 경우에는 법원으로 하여금 압류금지채권 중 급여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입니다.

배인구 변호사님도 “임금채권에 대해 압류상한선이 있다는 것은 그 근로자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생활하는 가족까지 고려한 것이며, 같이 생활하면서 위 법에 따라 그 생존을 보호받을 수 있었던 미성년자녀가 부모의 이혼이라는 외부적 요인으로 보호범위 밖으로 나가야 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라는 문제인식과 함께 양육비채권과 임금채권이 상충할 경우 근로의 대가의 최우선 보장이라는 요청에 대한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관련법상의 특별한 고려는 미성년자녀의 양육권보장이라는 요구와 적

11) 현행 규정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 조화 및 채무자와 그 가족의 인간다운 삶을 가능케 하는 최소한도의 생활보장이라는 목표에서 압류를 통하여 생활 곤궁을 가져올 것으로 인정되는 채권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압류제한을 규정한 것이다.

정선에서 절충 내지 조화를 요하지만, 현행 법 상 관련 규정들이 이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은 문제이며,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양육비채권에 대해서는 압류를 일부 허용하는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에 대한 입법대안으로 양육비채권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방식을 제안하고 계십니다.

2. 토론 의견

현행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 제4호 및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압류금지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구간	압류제한금액
150만 원 이하	급여채권 총액
150만원 초과~300만원 이하	150만원
300만원 초과~600만원 이하	급여채권×1/2
600만 원 초과	300만원+(급여채권×1/2~300만원)×50%

일정 금액의 급여채권에 대해 전액까지 압류가 금지된다는 것은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합니다.

가. 부양을 위한 특별한 고려의 필요성 강조

현행 민사집행법 상의 압류금지채권을 규정한 취지는 채무자와 그 가족의 인간다운 삶을 가능하게 하는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한 것이고, 채무자의 급여에 생계를 의지하고 있는 현재의 가족구성원(같이 생활하는 가족)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부양해야 하는 사람의 생계 또한 보장하기 위한 고려입니다. 생계보장을 위한 몫을 떼어놓은 이후 이들 사이의 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배변호사님께서 헌법재판소의 선례를 통해 제시한 주신 공무원연금법 상의 압류금지조항을 살펴보면, 공무원연

금수급권 전부에 대해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법원이 조정할 여지를 두지 않은 것도 문제이지만, 관련 조문 상 “채무자등”의 규정에서 ‘채무자와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 포함)’이라고 하여 압류금지를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생계보장의 범위에 동거 여부를 떠나 의무적 부양범위에 속하는 직계혈족(양육비 문제를 다루는 여기에서는 직계비속, 즉 자녀)이 배제되어 있다는 문제를 발견하였습니다. 의무적 부양범위에 속하는 직계혈족은 ‘동거 여부’를 떠나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에 속하며, 일정 범위의 압류금지는 본인 및 부양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채무자의 부양범위에 속하는 자는 압류금지 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도 압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현실을 반영한 법 개정 대비

또한 위 민사집행법상의 규정은 2011년 7월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것으로 그 사이의 변화를 반영하여 개정을 필요로 합니다. 즉, 2015년 7월 이후 절대적 빈곤선이었던 최저생계비 대신, 상대적 빈곤선 개념인 기준 중위소득으로 복지급여 선정기준이 변경되었으며, 최저생계비 개념을 따르고 있는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제7조제2항에 따르면 “개인회생 변제금의 신청기준이 되는 생계비와 관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개인회생절차 개신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 개념을 기준 중위소득으로 전환할 경우, 개인회생처리지침과 동일한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압류금지 임금채권의 인상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육비채권에 대한 특별한 고려는 더욱 절실히 해집니다.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최저생계비 (2011년)	532,583	906,830	1,173,121	1,439,413	1,705,704
기준 중위소득 (2018년)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기준 중위소득 60%	1,003,263	1,708,258	2,209,521	2,711,521	3,213,152

※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제6조, 제8조, 제12조의3에 따라 공표한 2018년 기준 중위소득

다. 양육비채권에 대한 압류금지의 특례를 규정한 외국의 입법례

배인구 변호사님의 발표에서 일본의 입법례를 자세히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일본도 채무자의 급여 등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에 의하여 채무자가 현저하게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민사집행법 제152조에서 압류금지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양에 관한 비용만은 제152조제3항¹²⁾의 규정에 의해 압류금지의 범위를 3/4에서 1/2까지 축소하고 있습니다. 즉, 1/4까지만 압류할 수 없었던 급여가 1/2까지 압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규정을 둔 배경에는 압류를 통한 이행확보의 강화, 절차부담의 완화, 부양에 관한 비용의 산정과정이 관계합니다.

첫 번째, 압류를 통한 이행확보의 강화입니다. 급여 등의 1/2까지 압류가 인정되는 것은 부양에 관한 비용뿐입니다. 이는 채무자가 다중채무에 빠져 다른 일반 채권자와 압류가 경합해도 1/4까지만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일반 채권자에 비해 부양에 관한 비용의 채권자는 적어도 압류된 나머지의 1/4을 회수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두 번째, 절차 부담의 완화입니다. 부양에 관한 비용에 처음부터 급여 등의 1/2까지 압류를 인정함으로써 압류금지 채권의 범위변경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고 부양에 관한 비용의 채권자는 절차부담이 완화됩니다.

셋째, 부양에 관한 비용 산정과정의 반영입니다.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명의를 필요하고, 채무명의를 기본적으로 법원 절차나 공증절차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채무자의 지급능력을 고려하여(혹은 채무자의 합의에 의하여) 부양에 관한 비용이 정해집니다. 때문에 부양에 관한 비용으로 채무명의를 존재한다면 지급능력이 있는 채무자의 급여 등을 1/2까지 압류해도 부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일본과 같이 부양에 관한 비용의 강제집행 시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금지의 범위를 조정하는 입법을 도입할 경우 직접지급명령에 압류경합이 존재하는 경우 병합의 한도에서 우선변제의 효과를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양육비 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프랑스는 양육비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재산 중 압

12) 일본 민사집행법 제152조③ 채권자가 전조 제1항 각호에 열거하는 의무에 관한 금전채권(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청구하는 경우에 전 2항의 적용은 전 2항 중 3/4은 1/2로 한다. 일본 민사집행법 제151조의2① 채권자가 다음에 열거하는 의무에 관한 확정기한의 정함이 있는 정기금채권을 갖는 경우에 그 일부에 불이행이 있는 경우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기금채권 중 확정기한이 도래하고 있지 않은 것에 관하여도 채무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 1. 민법 제7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부간의 협력 및 부조의무 2. 민법 제760조의 규정에 의한 혼인으로 발생하는 비용분담 의무 3. 민법 제766조(동법 제749조, 제771조 및 제7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 포함)의 규정에 의한 자의 감호에 관한 의무 4. 민법 제877조부터 제880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부양의무

류금지 부분에서 독점적으로 만족을 얻게 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전(Code des procédures civiles d'exécution) L.112-2조는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의 종류로 양육비채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양육비 채권을 양육비 채무자의 임금에서 집행을 할 때 여러 채권이 경합할 때 집행 순서를 양육비 채권, 임금 압류 한도 내에서의 국세, 일반채권의 순으로 정함으로써 양육비의 우선변제를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¹³⁾ 그러나 어떤 경우이든 공공부조 상의 최저생계지원비(RSA, Revenu de solidarité active)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한 만일 양육자가 직접 지급제도를 이용할 수 없거나 양육비 채권을 근거로 채무자의 은행계좌, 급여와 재산 등에 압류에 실패했을 경우에는 양육자는 자신의 주소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국세 체납에 준하는 회수(recouvrement par le biais du trésor public)'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¹⁴⁾

독일¹⁵⁾의 민사소송법(Zivilprozessordnung)¹⁶⁾도 제850조 제1항에서 압류 시 근로소득의 보호원칙을 선언하고, 부양

가족(최대 5인)의 숫자를 고려하여 채무자와 그 가족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압류금지 기본금액을 법률에 자세히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면서도(제850조의c), 제850조의d에서 부양청구권에 의한 압류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독일 민사소송법 제850조의d [부양청구권에 의한 압류]

① 법률에 기하여 친족, 배우자, 전 배우자, 생활동반자, 전 생활동반자에게 귀속하거나, 민법 제1615조의l, 제1615조의n에 따라 부모 일방에게 귀속하는 부양청구권에 기하여 압류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¹⁷⁾과 제850조의a¹⁸⁾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정한 급여는 제850조c에서 정하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하 생략)

일본은 우리와 유사한 규정방식을 취하면서도 부양료에 속하는 양육비채권에 특별한 고려를 반영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아무런 고려 없이 양육비 채권을 일반채권과 동일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일본, 프랑스, 독일 사례에서 살펴

13) Patricia BASS et al., *Le paye quotidien §170-40 Avis à tiers détenteur, créancier de pension alimentaire : qui payer en priorité? et comment?*, Wolter Kluwer, 2018.

14) 자세한 내용은 프랑스의 공공서비스 안내 사이트 참조,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1000> 참조, 근거 법령은 '양육비의 공공 회수에 관한 1975년 7월 11일의 법(Loi n° 75-618 du 11 juillet 1975 relative au recouvrement public des pensions alimentaires)'이다. 원문은 프랑스 법제처 사이트,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LEGITEXT000006068521&dateTexte=vig>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15) 김경욱(金慶旭), 민사집행법의 개정내용과 그 방향-재산조회제도와 급여채권압류금지문제에 한정하여-, 민사소송 제9권제1호,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54-255면.

16) 2005년 12월 5일(BGBI. I S. 3202; 2006 I S. 431; 2007 S. 1781)

17) 독일 민사소송법 제850조 [압류시 근로소득의 보호] ① 금전으로 지급될 수 있는 근로소득은 제850조a내지 제850조i의 규정에 의해서만 압류될 수 있다.② 이 규정에서 근로소득이라 함은 공무원의 복무급여와 연금급여, 근로보수와 복무보수, 퇴직금과 근로관계에서 일시적 또는 지속적으로 벗어나게 되어 지급받게 되는 퇴직금과 유사한 계속적 수입, 유족급여와 채무자의 수익활동이 전체를 차지하거나 본질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모든 종류의 용역에 대한 그 밖의 보수를 의미한다.③ 다음 각 호의 수입도 금전으로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a. 근로자가 그의 복무관계를 종료한 이후 기간 경영제한에 대한 보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급여b. 보험계약이 보험수익자 또는 그가 피부양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체결된 경우 그 보험계약에 기하여 지급받는 연금④ 금전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압류는 그의 명칭이나 계산방법에 관계없이 채무자의 근로 또는 용역제공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보수에 대한 압류를 포함한다.

본 바와 같이, 그 나라 고유의 특징을 반영하여 양육비 채권에 대한 압류금지 범위를 조정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를 참고한 법 개정이 요구됩니다.

발표문에서 제안된 두 가지 개정방안 중 양육비채권임을 소명하는 경우 압류를 허용하는 방식은 현행 민사집행법 제246조제3항을 이용할 경우 압류범위 조정을 위한 신청

에 따른 결과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양육비채권자에게 압류를 위해 양육비채권을 소명하게 하는 절차적 부담을 지운다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배변 호사님이 제안하신 양육비채권에는 압류금지범위에 관한 규정 자체의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8) 독일 민사소송법 제850조a [압류가 금지되는 급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할 수 없다.

1. 근로소득 중 초과근무에 대한 부분의 2분의 1 이하의 금액
2. 통례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소득 이외의 휴가기간에 대한 급여, 특별한 경영성과에 기한 임시급여 및 근속상여금
3. 통례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실비보상, 출장비와 기타 출장근무에 대한 특별수당, 자급근로자재에 대한 보상, 위험작업수당 및 어려운 작업에 대한 수당
4. 500 유로를 최고한도로 하는 1월 분 근로소득의 2분의 1 이하의 크리스마스수당
5. 집행이 혼인 또는 출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청구권 이외의 청구권에 기하여 이루어지는 때에는 혼인 및 출산보조금
6. 교육자금, 학비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급여
7. 근로 또는 직무관계에 기한 사망급여
8. 시각장애인 급여

기/획/연/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00년을 향해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민국 법률구조의 역사**

여성백인회관 건립 (2)

1977년 10월 여성백인회관의 문을 열다

여성백인회관의 보수공사와 개관 기념행사 준비로 1977년이 시작되었으나 3·1 사건은 또 다시 개관식 일정을 완전히 흐트러 놓았다. 3월 22일 대법원은 3·1 사건 선고에서 이태영 소장에게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의 유죄를 확정하였기 때문이었다. 이태영 소장은 형 집행정지 결정으로 영어의 몸이 되는 것은 피했지만 공민권 박탈과 함께 3년간의 자격정지로 상담소 이사직은 물론 변호사법 제10조에 의해 변호사 자격까지 박탈당했다.

이에 따라 황신덕 이사장은 4월 4일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여 4월 26일 예정되었던 여성백인회관 개관식을 10월 5일로 연기하여 창립기념일 행사와 함께 거행하기로 결의하는 한편 일단 이태영 소장의 이사직 사표를 수리했다. 그리고 이사 보선과 상담소 정관 제 12조 2항 ‘소장은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를 ‘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로, 3항 ‘소장은 상담소를 대표하고 정관에 따라 상담소의 업무를 집행한다.’를 ‘소장은 이사회 회장의 지휘를 받아 상담소의 업무를 감독 집행한다.’로 개정하였다.

이러한 새 정관 제12조 2항에 따라 이사가 아닌 사람도 소장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므로, 이사회에서 이 소장을 다시 소장으로 선출할 것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 3월 22일 형 확정 이후 4개월 만에 이태영 선생이 다시 소장직을 맡게 되었다. 하지만 대외적인 모든 권리의무와 책임은 황신덕 이사장의 이름으로 집행되어야만 했다. 이처럼 세찬 강풍이 상담소에 휘몰아쳤지만 재취임한 이 소장을 비롯한 상담소의 모든 직원들은 오히려 더욱 분발하여 열심히 일했다.



** 상담소는 지난 2016년을 창립 60주년의 해로 보내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구조 기관으로써 자부심을 가지고 백년을 향해 나아간다는 전망을 세운 바 있다. 이러한 전망의 토대로 삼고자 상담소의 역사를 바로 알고 널리 알리기 위해 상담소의 연대기를 연재한다. 상담소는 지난 2009년 「번민하는 이웃과 함께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50년사」를 펴낸 바 있으며, 이 연재는 이를 기초자료로 하였다.



여성백인회관의 문을 열다

1977년 10월 5일 오후 2시, 황신덕 이사장, 이태영 소장 및 여성백인회원들은 회관 옥상에 드리워진 100가닥의 진하고 연한 보라색 테이프를 한 가닥 씩 잡고 여성백인회관에 들어섰다.

기념식은 황신덕 이사장의 개화사와 흥란회 건축기성회장의 회관 건축에 관한 경과 보고에 이어 이태영 소장의 기념사 이어서 회관 건립과 상담소 운영에 공로가 큰 인사들에 대한 표창과 감사패 수여 순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김옥길 이화여대 총장의 축사와 일본의 여성운동가 이치가와 후사에 씨의 축사에 이어 김자경 씨의 축가, 국외 백인회원 대표 미국 지부장 이순영 씨의 이태영 소장에 대한 감사패 수여, 심우섭 세대건설 대표의 회관 열쇠 증정으로 뜻깊은 개관식을 마쳤다.

여성백인회관의 ‘백인’의 의미는 이 건물이 어느 한 사람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어느 한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라는 의미, 즉 백 사람, 천 사람 아니 한국 여성 모두의 소망에 의해 이룩되었고 또 한국 여성 모두를 위한 건물이라는 뜻이다. 여성백인회관 개관으로 상담소는 20여 년 간의 셋방살이 전전을 벗어나 내 집에 정착하게 되었고 건물의 일부를 임대함으로써 고정수입으로 재정의 일부를 감당하는 기쁨을 마련했다.

여성백인회관은 상담소 사업을 영속성을 확고히 해주는 계기가 되었으며 빈민하는 이웃과 함께 가정의 평화를 지향하고 억눌린 여성을 해방시키려는 이상과 집념을 끊임없이



이 실현시키는 약속의 집이었다. 또한 2008년 새로운 회관이 설 때까지 성년에 접어든 상담소가 더 큰 책임을 향하여 전진하고 내일에 도전하여 새 역사를 전개하려는 의지의 터전이 되었다.

“마침내 이 집이 우뚝 섰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결코 돈으로만 지어진 집이 아닙니다. 이 집은 1천 5백 명 국내외 한국 여성들의 뜻과 정성이 알알이 모아진 결정체입니다. 21년 동안 상담소를 찾아들어 호소해 온 9만 5천 명의 한과 행복에의 꿈이 쌓이고 쌓인 끝에 세워진 집이기도 합니다. 회관의 완공은 우리 여성들의 역량이 거둔 승리이며 짓밟힌 이들의 행복과 인권을 되찾아 주려는 합치된 의지의 승리입니다. 법률구조운동은 법의 서민화운동이며 가정의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운동인 동시에 가장 기본적이고 급선무인 인권운동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집이 지어짐으로써 이제 그 운동은 반석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며 오늘을 같이 기뻐합니다. 이제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이 사업은 중단되거나 꺾여질 수 없습니다. 이제 상담소는 앉아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 순회상담을 이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입니다. 황신덕 이사장님과 오랜 세월 동안 알게 모르게 상담소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애써 주신 모든 분들의 은공은 앞으로 영원히 뻗어 갈 이 사업이 두고두고 값어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 근거는 이 회관이 어느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고 여성 모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성백인회관이라 했습니다. 다시는 억울한 이, 억눌린 이, 짓밟히는 이가 없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한 가정들로 이루어지는 정의로운 사회를 희구하는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 이 집은 바로 그러한 염원으로 지어진 그들 모두의 집인 까닭입니다.” - 이태영 소장 기념사 중에서

편집부



화목한 부부는 배우자를 바꾸려 하지 않고, 그 말과 행동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

- 일 시 : 2018년 10월 27일 ~ 28일
- 장 소 : 양재동 더케이서울호텔
- 참석자 : 서울가정법원의 상담위탁자 부부 30쌍과
자녀 15명 포함 75명
- 강 사 : 이서원(한국분노관리연구소 소장,
부부갈등문제 진단 전문상담가)
이윤정 · 정지혜 · 한은선(미술심리치료전문가)
- 진 행 : 차연실 · 박상진 상담위원,
최은아 선생님 외 자원봉사자 6명

(2) 당신으로 가는 작은 선물, 행복찾기 부부캠프

1) ‘부부는 사소한 일 때문에 틈이 생긴다.’

이서원 소장은 부부가 싸우게 되는 궁극적인 이유는 서로 자신의 입장을 알아달라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배우자를 알아주고 있으며, 배우자는 자신을 얼마나 알아주는가에 대해 각각 점수를 매겨보고 부부끼리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2) ‘레몬은 시고, 오렌지는 달다.’

이어서 이서원 소장은 이혼 사유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성격차이를 언급하면서 이 중 화를 내는 방법의 차이를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성격이 급하면서 세고 외향적인 ‘버럭이’ 유형, 둘째, 성격이 급하지만 약하고 외향적인 ‘투덜이’ 유형, 셋째, 성격이 느리지만 세고 내향적인 ‘피말이’ 유형, 넷째, 성격이 느리면서 약하고 내향적인 ‘空空이’ 유형이다. 상대방의 유형을 고치려 들지 말고 이를 인정하고 상대방이 화를 내는 유형에 맞춰 화를 푸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부부간 성격차이로 인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

I. 프로그램

1. 첫째 날 저녁강의

(1) OPENING

차연실 상담위원이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개 및 본소 부부캠프의 취지를 전달한 이후, 이서원 소장은 1박2일의 짧은 시간동안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어보고 부부관계의 원리를 배워갈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당부하면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였다.

부부끼리 본인이 어떤 유형이며 배우자가 어떤 유형인지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의 유형을 인정하겠다고 다짐해보는 시간을 가진 후, 레몬은 시고 오렌지는 단 것과 같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첫 날 강의를 마쳤다.

2. 둘째 날 오전강의

(1) 당신으로 가는 작은 선물, 행복찾기 부부캠프

1) '천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성이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천성이라면 이후 자신이 겪게 되는 경험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은 인성이다. 이러한 인성은 그 사람이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에 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례 1. '내가 살고 싶은 집은요.'

교수였던 남편은 매번 가사 도우미에게 겸상하기를 권유하였고, 그럴 때마다 아내는 가사 도우미가 부부와의 식사 자리를 다소 어려워한다는 점을 파악하고 따로 밥을 먹자고 말을 하였다. 남편은 아내가 가사 도우미를 낮게 보고 그런다고 생각하면서 아내를 꾸짖었고, 아내는 속사정도 모르면서 자신을 가르치려 드는 남편에게 서운함을 호소하였다. 사실 남편이 그렇게 행동한 것은 유학시절 가난한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서양 친구들이 자신과 겸상을 거부하여 서러움을 느꼈던 경험이 있었던 것이었다. 이후 남편은 가사 도우미에게 과거 유학 시절의 자신을 투영하고 있었다는 점을, 아내는 남편 행동의 원인을 알고 인정함으로써 두 부부간의 갈등은 해결될 수 있었다.

이서원 소장은 각자 자신이 살아온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추구하는 바가 다르고 이는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면서, 각자 자신이 꿈꾸는 가정의 모습에 대해 적어보고 왜 그렇게 적었는

가를 자신이 자라온 환경과 관련지어 생각해보도록 하였다. 그리고 나서 배우자가 적은 내용을 보면서 왜 배우자가 그렇게 썼는가에 대해 생각해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2) 화목한 부부와 불화한 부부의 차이

화목한 부부든, 불화한 부부든 살면서 안 좋은 일을 겪게 되는 것은 똑같으나 그 일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차이를 보이게 된다. 첫째, 화목한 부부는 '나도 맞고 너도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불화한 부부는 '내가 한 건 맞지만, 네가 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둘째, 화목한 부부는 배우자를 변화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부부이다. 따라서 화목한 부부는 배우자를 바꾸려고 하기 보다는 배우자의 패턴을 파악하여 배우자가 좋아하는 것은 하고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셋째, 화목한 부부는 배우자의 말과 행동에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믿지만, 불화한 부부는 배우자의 말과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고 불평한다. 마지막으로, 화목한 부부는 '당신이 나보다 더 힘들다'라고 먼저 생각하기에 대화에 겸손이 흐르지만, 불화한 부부는 서로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며 대화하기에 바쁜 부부이다.

3) '내려가는 대화'

대화는 처음 시작하는 사람의 책임이 70%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첫 마디가 공격적이면 대답 역시 공격적일 수밖에 없게 된다. 첫 마디가 비난이나 지적이면 듣는 상대방



역시 마음이 상한 상태로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말하는 요지가 귀에 들어오지 않게 된다. 그러나 내가 먼저 스스로를 낮추고 잘못을 시인하면 상대방 역시 자연스럽게 호의적이고 부드러운 말투를 쓰게 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된다.

3. 마무리

마지막으로 이서원 소장은 문제가 생긴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두고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가에 따라 문제가 될 수도, 아닐 수도 있기에 부부가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에게 맞춰주는 태도를 가져줄 것을 당부하면서 프로그램을 마무리하였다.

4. 자녀 미술치료 프로그램

- 「그림을 통해 나를 찾는 여행」

이번 부부캠프에서도 자녀들을 대상으로 “그림을 통해 나를 찾는 여행”이라는 주제 하에 토요일과 일요일 양일간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1) 유아 프로그램

▶ 강사 : 정지혜(미술심리치료전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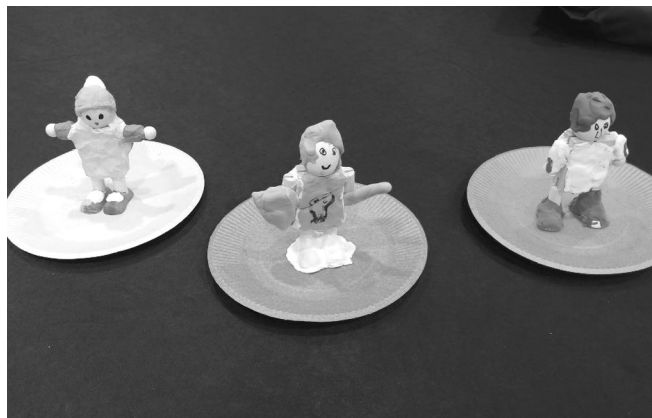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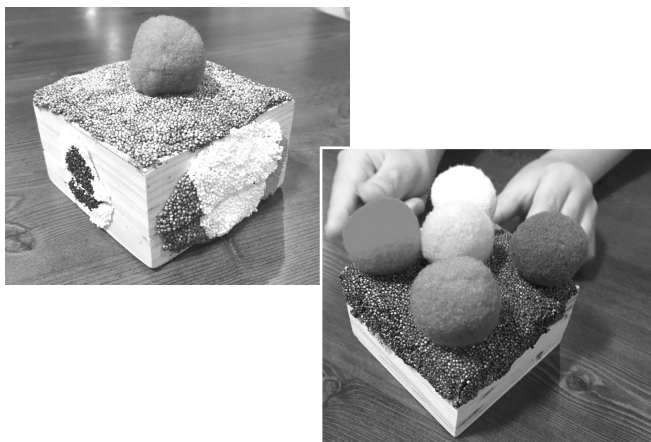
정지혜 미술심리치료전문가는 보육과 안전이 우선시되는 4-5세 유아를 대상으로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였

다. 첫째 날에는 ‘안녕! 반가워’ 활동을 통해 자기를 소개하고 친밀감을 형성하며 신체활동을 통해 이완한 후, ‘My book 표지 만들기’ 활동을 통해 창의적인 자기표현을 촉진할 수 있도록 도왔고, ‘내 마음의 보석상자’ 활동을 통해 자기감정을 표현하며 성취감과 자율성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에는 ‘Funny play’ 활동을 통해 창의적 자기표현력을 촉진시켰으며, ‘마음가방’ 활동을 통하여 자기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왔고, ‘I can do it!’ 활동을 통해 집단 응집력을 증진시키고 성취감을 통한 긍정적 자기인식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참석한 유아들 모두 안전한 환경에서 미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자유롭게 표현하였고, 미술작업과 신체놀이의 요소가 함께 구성되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2) 유아동 프로그램

▶ 강사 : 한은선(미술심리치료전문가)

한은선 미술심리치료전문가는 창의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기 내면의 다양한 정서를 표현할 수 있도록 7-8세 유아동 대상으로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첫째 날에는 ‘나를 소개할게’ 활동을 통해 친밀감을 형성하고 미술 표현에 대한 흥미를 증진하도록 돕는 시간을 가졌다. ‘마음의 음식’ 활동에서는 점토매체를 통해 이완과 해소를 경험하며 다양한 감정에 대해 이해하고 탐색할 수 있었고, ‘나도 감정책 작가’ 활동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왔다. 둘째 날에는 ‘마음의 오르골’ 활동을 통해



오르골 음악을 들으며 마음 속에 떠오르는 것을 이야기 나누고 자신만의 오르골을 만들어보았고, ‘감정 물고기’ 활동을 통해 내면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도왔으며, ‘나의 동물에게 필요한 건’ 활동을 통해 집단원들간에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하도록 하였다. 아이들 스스로 적절한 이완과 해소를 경험하였고, 자기 작업에 몰두할 뿐만 아니라 신체에 에너지를 충분히 발산함으로써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3) 아동 프로그램

▶ 강사 : 이윤정(미술심리치료전문가)



이윤정 미술심리치료전문가는 9세 이상의 아동 대상으로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첫째 날에는 ‘나를 소개합니다’ 활동을 통해 집단의 친밀감을 형성하도록 돕는 시간을 가졌다. ‘마음공간’ 활동에서는 감정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색으로 보석함을 꾸며보았고, ‘예쁜손 본뜨기’ 활동을 통해 나의 손을 본뜨는 작업을 통해 긍정적인 신체상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왔다. 둘째 날에는 ‘아바타 꾸미기’ 활동을 통해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대신 해줄 수 있는 아바타 인형을 만들어보았고, ‘우리들의 파티’ 활동을 통해 타인을 수용함과 동시에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나를, 너를 사랑하기’ 활동을 통해 서로를 칭찬하면서 지지적 상호작용을 경험하도록 하였다. 참석한 아동들은 미술표현을 통해 자기 내면의 다양한 정서를 표현할 수 있었고, 다른 친구들과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킬 수 있었다.

II. 정리

이번 캠프에서는 부부가 서로의 성향과 경험의 차이 때문에 갈등을 겪을 수 있으므로 다름을 인정하고, 더 나아가 문제에 있어 자신의 방식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가에 대해 생각하면서 상대방에게 맞는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할 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생각하고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 초반에 서로 대화를 거부하거나 대화를 하더라도 상대방을 쳐다보지도 않는 등 서먹한 모습을 보였던 부부도 프로그램이 진행될수록 대화를 더욱 활발히 하는 것은 물론, 가까이 앉아 서로를 쳐다보며 웃기도 하고 가벼운 스킨십을 하는 등 한층 더 친밀해진 모습을 보였다. 부부간에 얼어있던 마음이 이번 캠프를 통해 조금이나마 녹아 내려 이후로는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되고자 노력하기를 기대해본다.

차연실 상담위원



인·터·넷·상·담

Q

저는 남편의 폭행으로 이혼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재판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전 남편과 살고 있던 서울에 있던 월세 집은 보증금 3,500만 원에 월세 50만원이었고, 임차인은 남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저와 남편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각각 50%씩으로 판단하여, 남편은 저에게 재산분할로 1,75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판결에 따른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저는 위 보증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지만, 법원은 위 보증금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면서 이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보증금액은 서울은 3,7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세종특별자치시·용인시 및 화성시는 3,400만원, 그 외 광역시·안산시·김포시·광주시 및 파주시는 2천만 원, 그 외 지역은 1,700만원입니다.

다만 민사집행법은 제246조 제3항에서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라고 하여 채권자가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사소송법은 판결에 의하여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하는 사람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참조) 채무자가 이러한 법원의 이행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참조).

김민선 변호사

청춘의 사진

서경식 지음 김석희 옮김
창비, 2002

오래 전에 읽었던 책을 다시 보았다. 1998년 겨울에 열흘 쯤 파리에 있으면서 미술관을 돌아다녔던 기억을 떠올렸다. 루브르 미술관을 이틀, 오르세 미술관을 하루 그리고 로댕 미술관과 피카소 미술관 하루, 퐁피두센터에서 다시 하루 그래도 루브르와 오르세는 부족했다. 작품이 너무 많아서 멀미가 날 지경이었으니까.

루브르에서 특별히 유리 케이스 안에 보관된 '모나리자'를 보면서 눈물이 핑 돌았던 기억이 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앞으로 헤치고 가는 데에도 제법 시간이 걸렸는데, 특별히 좋아한다고 생각해 보지 않았던 그림 앞에서 '앗, 이 감격은 뭐지? 전시 해 놓은 게 모작이라는 설도 있던데, 내 이 감동은 대체 어디서 온 거지?' 갑자기 아득해 졌던 기억이 있다. 다음다음 날 오르세 미술관에서는 모네도 좋고 고흐도 좋았지만 그저 미술책 어디 한 귀퉁이에서 이름 만 보았던 알프레도 시슬리의 작은 그림들 앞에서 마냥 좋았던 기억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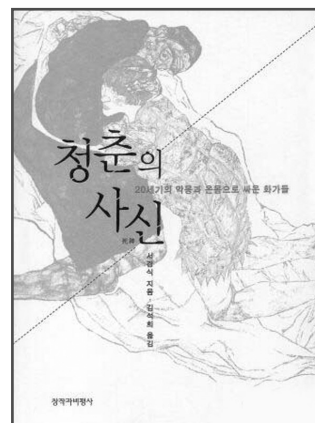
도쿄 경제대 서경식 교수는 『청춘의 사진』에서 예술에 대해 '숨 막히는 지하실에 뚫린 작은 창문' 같은 것이라 쓰고 있다. 1971년 군사독재정권의 가장 순위권 먹잇감이었던 재일교포 유학생 두 형(서승, 서준식)을 유학생 간첩이라는 조작된 죄목으로 빼앗기고, 20여년간 일본의 가족들은 통곡과 인고의 세월을 살았다. 결국 아들들의 석방을 보지 못하고 부모들은 세상을 떠났고 서승, 서준식 형제가 감옥에서 잔혹한 고문을 당하고, 사형선고를 받고 단식투쟁을 벌이는 동안, 서경식과 일본의 가족들은 이들을 살려내고 구출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삶의 전부였다 한다. 당시 저자는 "지하실에 처넣어진 듯한" 기분을 느끼고 있었다고 밝힌다. 예술은 그에게 '숨 막히는 지하실에 뚫린 작은 창문' 같은 것이

었는데 창문이 벽 높은 곳에 있어서 바깥 경치를 직접 접할 수는 없지만 하늘의 색깔 변화나 공기가 흐르는 기미는 느낄 수 있었으며, 비록 창문으로 도망칠 수는 없지만 그 작은 창문 덕에 살아 있을 수 있었다고 한다. 이 같은 고뇌의 시절에 작은 숨구멍으로 미술관을 순례하고 그림을 보면서 저자는 『나의 서양미술 순례』 『청춘의 사진』 같은 책들을 남겼다. 『나의 서양미술 순례』는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의 미술로부터 시작하고 있으며, 이 책 『청춘의 사진』은 전쟁과 살육의 시대라 할 수 있는 20세기 전반의 회화예술에 관한 저자의 에세이 서른한 개를 모은 것이다. 뼈까썩, 몽크, 놀데, 실레 등 죽음의 숨결을 느끼며 창조적 욕망을 불사른 예술가들의 삶과 작품의 배후인 시대와 인생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담았다. - 우리 외래어 표기법은 경음을 쓰지 않는데 이 책은 모두 경음을 쓰고 있어서 그대로 쓴다 - 모든 에세이와 작품들이 다 좋았지만 특히 첫 작품인 몽크의 '에로스의 해', 책의 제목과 같은 '청춘의 사진'이라는 제목을 쓴 에곤 실레의 '죽음과 소녀' 등이 좋았다. 에곤 실레에 대한 영화를 본 직후라서 그랬을 수도 있고.

퐁피두센터에서 보았던 작품을 떠올리게 했던 모딜리아니의 '자화상'도 정말 흥미로웠다. 중학생 때 그의 그림도 좋았지만 화가가 특별한 미남이라 더 좋아했던 기억이 나면서 죽음 직전 그의 자화상에 대한 이야기는 약간 충격적이기까지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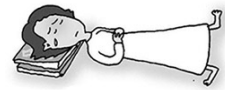
저자는 개인적으로 참혹할 만큼 시대와 불화하면서, 역사적 맥락으로서의 살육과 전쟁을 회화를 통해 이해하고 위로받았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의 이해와 위로를 나누어 받는 느낌이었다.

이 숙 현 편집부장



결혼과 인생 (189)

장차현실의 만화일기 84



글 | 그림 | 장차현실

우리 식구



상·담·소·소·식



본소,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과 진선미 의원실 공동으로 심포지엄 개최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압류금지채권 규정의
보완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상담소는 지난 10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진선미 의원실과 공동으로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압류금지채권 규정의 보완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우리 사회 모든 가정과 가족 구성원의 복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본소는 일찍이 지난 2001년 창립 45주년 심포지엄부터 우리 사회에 본격적으로 양육비에 대한 문제제기를 시작하여 논의를 주도해 왔으며 구체적인 대안 마련에 앞장서 왔다. 이번 심포지엄은 그 연장선에서 보다 구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부모의 미성년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는 가장 일차적 의무로 부모는 자신의 수입이 최저 생계비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이를 나누어 자녀를 부양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일정기준의 생계비 보장이라는 명목으로 현행 민사집행법 제246조와 같이 일률적으로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를 정

하는 것은 결국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기에, 미성년 자녀 양육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양육비 채권의 경우에는 압류금지채권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주제로 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된 것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천정환 변호사(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의 사회로 시작하여 본소 가족법개정위원회 위원장인 김상용 교수(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다. 본소 광배희 소장,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현천욱 이사장, 진선미 의원, 대한변협 김현 협회장의 인사말씀에 이어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먼저 배인구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가사상속센터장)의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 규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소고’와 이은영 변호사(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의 ‘압류금지채권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자로는 이동희 판사(서울가정법원), 박복순 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노지선 추심지원부장(양육비이행관리원), 오영나 법무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 최수진 상담위원(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이 참석하였다.

(관련사진 2면, 관련내용 6면)

본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적 약자의 법률복지 및 의료 수급권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18년 10월 30일 본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진중오 본부장)는 본소 대강의실에서 업무협약(MOU)을 맺고 협약서를 교환했다. 본소와 공단은 이 협약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사회 가치 창출을 위하여 소외된 이웃의 무료 법률상담 및 결손처분 등 교육, 양 기관 제도 홍보 및 지역사회 연대 지원 프로그램 참여는 물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 등 상호 필요한 새로운 협업 모델 창출 등을 적극 지원하고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날 협약식에는 본소 박배희 소장과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조은경 상담위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진중오 본부장, 이미희 부장, 남궁용호 팀장, 오지현 과장 등이 참석하였다.

이레상담 교육원 교육생들 본소 방문 교육

10월 31일 이레상담 교육원의 가정폭력시설 종사자 양성



교육 교육생 및 직원들(20명)이 본소를 방문하여 상담소의 법률구조 역사 및 가족법개정사와 관련한 영상 시청과 상담소 사진 전시실을 관람하였다. 그리고 가정 폭력 관련 이혼 소송 관련 판례 동향에 대한 강의(복미영 상담위원)를 듣고, 본소의 법률구조 사업 및 기관 연계에 대해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생들은 법률구조 사례와 소송 구조 절차 및 대상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출장 법교육 및 본소 실습 활발

법의 생활화 운동의 일환으로 본소의 법 교육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출장 법 교육은 가족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가정폭력특례법 등을 주제로 하며, 본소 상담위원들의 상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충실한 강의로 넓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본소에서의 실습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이대 현장실습 연수 (9/7-11/16)

권운정

출장법교육

- 10.12. 학교폭력예방교육 - 점동중 교사대상
- 김진영 상담위원
- 10.15. 학교폭력예방교육 - 고명경영고 교사대상
- 최수진 상담위원
- 10.18. 서초주민을 위한 법교육
- 박소현 상담위원
- 10.29. 강서지역자활센터 - 신용회복및가족법교육
- 조은경 상담위원

가정법원 출장상담

조경애, 박소현, 조은경, 복미영, 김진영, 최수진, 전규선, 박소연, 정다혜, 천다라, 유혜경, 권지연 상담위원, 김민선, 황현정 변호사, 백국현 법무관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은 10월 17일 사법정책연구원에서 주최한 2019년 연구 주제 모색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간담회에 참석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은 10월 12일 「현대사회의 입법이론과 현안」을 주제로 서강대학교 가브리엘관에서 개최된 2018 입법평가연구사업 연합학술대회(한국법제연구원/한국법사회학회/한국입법학회/한국젠더법학회/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주최)에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에 대한 토론발표를 하였다.

곽배희 소장,

제5회 윤후정 통일포럼 참석 등

본소 곽배희 소장은 10월 12일 이화여대 ECC 이삼봉홀에서 '남북관계의 미래,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제5회 윤후정 통일포럼에 참석했다. 17일에는 본소를 방문한 대검찰청 구본선 형사부장(검사장)을 맞아 환담하고, 유관기관으로서 상호 이해와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구본선 형사부장은 본소가 대검찰청 형사 업무 프로세스 유관기관으로서 특히 여성, 가족, 아동문제 및 가족구성원간의 폭력 등 가정 전반의 문제를 대상으로 법률구조와 범죄피해자구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의견을 나누고 경청하였다. 이 자리에는 대검찰청 한윤경 형사2과장(부장검사)과 본소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이 각 배석하였다.



고맙습니다

2018년 10월 자원봉사자

• 전화안내를 도와주신

강경숙, 김인숙, 김정혜, 문은전, 문은희, 유문숙, 이병주 님

• 주간상담을 해 주신

강종협, 경수현, 김태주, 문동주, 박소영, 박수열, 박은정, 박효선, 손태홍, 안서연, 이해민, 이효재, 조진형 변호사 님

• 야간상담을 해 주신

김소이, 김연두, 김진아, 김진아 2, 심미숙, 이승주, 임주용, 전성배, 황미옥 변호사 님

• 다문화가정을 위한 영어상담을 해 주신

데이비드 워터스 변호사 님

• 학생 자원봉사

강명주, 강민재, 고원지, 김소미, 김초원, 김현지, 남서연, 박소연, 박정현, 서혜수, 성장훈, 성혜원, 오민지, 윤지원, 이다경, 이수연, 전해진, 정희원, 조혜영, 최슬지, 최희원, 한 솔, 함솔희, 홍현정, 황정민 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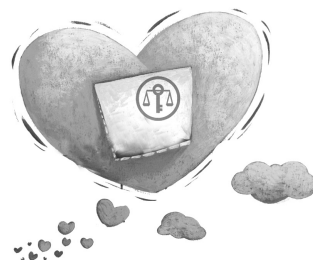
후 원

• 일반회원이 되신 분

김재희 님

• 운영후원금을 주신 분

김용현, 이현혜 님



회원이 되시려면

일반회원들은 월 5천원씩 또는 년 5만원, 평생회원은 50만원을 일시 납입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 밝히기를 원치 않는 분들은 아래의 구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주소가 변경된 회원은 반드시 상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농 협 317-0003-1418-11 가정법률상담소
연락처 : 780-5688 재무회계과



지·부·소·식

강릉지부

10월 5일, 30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가사상담 및 가사조정을 실시하였다. 8일 강릉지원 협의이혼 대상자 자녀양육안내 교육을 실시하였다.

구리·남양주지부

10월 2일, 16일, 23일, 30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가사조정, 형사조정을 실시하였다. 이경숙, 장경아, 김효경, 황은하, 정이수, 여지은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군산지부

10월 4일, 25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부모양육안내 교육을 실시하였다. 18일 군산지원 가사조정을 실시하였다.

대구지부

대구가정법원 이혼관련 출장상담을 매일 실시하고 있으며 상담 71건, 가사조정 15회를 실시하였다. 이혼 전·후 가족관계회복사업으로 대구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 중 만 1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주말부모교육 등 개별상담(115명, 124건), 부모교육 4회를 실시하였다. 김주현, 임경, 류경재, 이용원, 이규영, 윤준상, 이정훈, 엄요한, 이상은, 이서준, 이희대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성남지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협력사업으로 성남지원 협의이혼 의무상담을 9회, 이혼부부의 미성년자녀양육안내를 성남지원 6회, 광주시법원 2회를 실시하였다. 강은혜, 공영서, 김민주, 김승구, 김정혜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송도지부

10월 20일 인천연수문화공원에서 상담 및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27일 남이섬으로 건강한 가정을 위한 가족힐링여행을 실시하였다. 박진호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수원지부

부설 보라상담원에서 경찰동행 가정폭력피해자 가정방문상담을 실시하였다. 수원지방법원 가사조정을 1회 실시하였다. 박진우, 임용호, 이윤선, 강은혜, 전태우, 박지훈, 허정택, 서정식, 구민혜, 송지영, 김진영, 한두환, 한승일, 양승철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순천지부

10월 2일, 16일, 23일, 30일 매주화요일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에서 미성년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실시하였다. 26일~27일 이혼위기관계 회복을 위한 부부캠프 「우리 함께 걸어요!」를 실시하였다.



전주지부

전주지방법원 협의이혼 상담을 3회, 가사조정을 2회 실시하였다. 10월 5일 전북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사례회의 및 법률구조 홍보를, 16일 LH 전주주거복지 통합지원센터에서 가정법률상담 및 소송구조 홍보를 실시하였다. 9일 단합야유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김성중, 박형윤, 서보람, 장충석, 진휘원 변호사가 소송구조봉사를 하였다.

창원·마산지부

10월 16일 창원지방법원 가사조정을 실시하였다. 17일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백경석, 민태식, 박인욱, 이창희, 이재영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복미영 상담위원

진주지부

양임석, 장진호, 류기정, 정동운 변호사가 소송구조 및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청주지부

10월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였다.



2018년 9월 전국 상담통계

상담소 본부 및 전국 지부에서 2018년 9월 한 달 간 접수·처리한 총 상담건수는 11,603건으로 본부가 6,178건, 지부가 5,425건이었다. 본부는 5,509건의 법률상담 외에 화해조정 554건·소장 등 서류작성 73건·소송구조 42건을 처리하였으며, 지부는 법률상담 4,206건·화해조정 1,183건·소장 등 서류작성 28건·소송구조 8건을 처리하였다.

본부의 법률상담 5,509건을 사건내용별로 살펴보면, 2018년 8월에 비해 가사사건의 경우에는 부부갈등(2.8%→3.5%), 위자료·재산분할(9.4%→12.1%), 친권·양육권(6.0%→6.2%), 양육비(7.2%→7.5%), 친생자존부(2.2%→2.6%), 부양(1.6%→2.0%), 가족관계등록부(3.0%→4.0%), 친양자(0.4%→0.6%), 개명(0.8%→1.3%), 파양(0.2%→0.3%), 미성년후견(0.6%→0.8%)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한편,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임대차(0.1%→0.4%), 부동산(0.2%→0.3%), 파산(3.6%→3.7%), 개인회생(0.4%→0.6%)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본부의 법률상담 5,509건을 상담방법별로 살펴보면, 면접상담 885건(16.1%), 전화상담 4,373건(79.4%), 통신 및 인터넷상담 228건(4.1%), 서신 1건(0.0%), 순회 20건(0.4%), 지상 2건(0.0%)이었다.

2018년 10월 본부 상담 통계

총상담 6,804		
법률상담 (6,146)		
면접	전화	통신
1,180	4,784	184
화해조정	소장 등서류작성	소송구조
505	113	38

* 2018/10 인터넷을 통한 법률정보제공(본부) 103,100건

지 부	총상담	법률상담					합계	화해조정	소장 등 서류작성	소송구조
		면접	전화	통신	서신	기타				
서울(본부)	6,178	885	4,373	228	1	순회 20 지상 2	5,509	554	73	42
강릉 (033) 652-9555	124	104	15				119	4	1	
구리·남양주 (031) 551-9976	318	20	25	2			47	271		
군산 (063) 442-1560	102	28	42				70	30	2	
대구 (053) 745-4501	498	174	85	1		출장 80	340	158		
대전 (042) 520-5258	219	40	177				217		2	
동해 (033) 535-0188	110	37	73				110			
목포 (061) 273-2514	125		123	1			124			1
부천 (032) 667-2314	361	48	161				209	152		
성남 (031) 707-6661	298	176	52	1		출장 22	251	44	3	
송도 (032) 834-1369	194	44	24				68	123	3	
수원 (031) 243-4600	375	142	81	3		출장 82	308	63	1	3
순천 (061) 753-9910	160	63	93				156	4		
안동 (054) 856-4200	84	10	44				54	29	1	
울산 (052) 246-9568	91	25	62				87	1	3	
익산 (063) 851-5113	186	42	144				186			
인천 (032) 865-1120	301	63	50				113	184	4	
전주 (063) 244-2930	204	99	59	28	8		194	6		4
청음 (063) 535-3705	153	56	97				153			
제천 (043) 644-5690	109	28	80	1			109			
충구 (02) 2238-6554	316	237	79				316			
진주 (055) 746-7975	142	62	63				125	17		
창원마산 (055) 261-0280	289	118	126	1			245	42	2	
청주 (043) 257-0088	156	58	47	3			108	47	1	
춘천 (033) 257-4688	217	134	58	2		출장 23	217			
태백 (033) 554-4004	75	39	17			출장 19	75			
평택안성 (031) 611-4251	157	49	87			출장 8	144	8	5	
포항 (054) 283-7555	61	4	57				61			
지부총상담	5,425	1,900	2,021	43	8	출장 234	4,206	1,183	28	8
총 상담	11,603	2,785	6,394	271	9	출장 234 순회 20 지상 2	9,715	1,737	101	50

** 2018/9 인터넷을 통한 법률정보제공(본부) 128,285건

백인변호사단 소 · 송 · 구 · 조

완결된 소송구조 사건

아내를 폭행한 후 내쫓아 10년 이상 별거한 남편에 대해 이혼 판결

법률구조 2018-47

담당 : 문석빈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여, 56세)와 피고(남, 63세)는 1983년 8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이다. 혼인 초 피고는 막노동을 하였으나 하루 일하고 열흘 쉬기를 반복하였고, 이에 원고가 파출부 및 부업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 피고는 일을 하지 않는 날은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파출부 일을 마치고 늦게 귀가한 원고를 폭행하여 늑골에 금이 가는 부상을 입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귀가 잘 들리지 않을 정도로 폭행하여 현재까지도 원고는 우측 귀의 청력이 좋지 못한 상태이다. 2004년경 피고는 원고를 집에서 쫓아냈고, 원고는 피고의 폭행과 생활 무능력을 견딜 수 없어 피고를 피해 살았다. 원고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인 원고의 모와 함께 생활하면서 작은 가게에서 분식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가게 임대료도 지급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원고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지 않은 채 원고의 모가 사망하면 원고는 모의 임대아파트에서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되어 원고는 피고와 이혼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18.7.6.)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자녀 병원비로 채무가 증대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18-71

담당 : 김진아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46세)은 2002년경 혼인을 하고 슬하에 자녀 1명을 두었다.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이 잘 되었고 신청인은 육아에 전념하였으나 2010년경 5세이던 자녀가 희귀난치병을 앓으면서 가세가 기울기 시작하였다. 자녀는 오랜 기간 입원하여 주기적으로 각종 검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감염의 위험 때문에 1인실을 사용한 까닭에 막대한 병원비가 지출되었다. 신청인의 배우자가 밤낮으로 쉬지 않고 일하였으나 병원비를 감당하기에는 벅찼고, 설상가상으로 사드문제로 사업체 운영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큰 적자를 보았다. 결국 배우자는 더 이상의 운영이 어려워 폐업 후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다. 이후 생활비 및 병원비가 필요한 신청인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별다른 소득원이 없다보니 카드돌려막기까지 이어졌고, 오래 버티지 못한 채 2017년경 지급불능상태가 되었다. 이처럼 희귀난치병을 앓고 있는 자녀를 돌보기 위해 채무를 지게 된 신청인은 채무독촉에서 벗어나기 위해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18. 08. 31.)

채무자를 면책한다.

가정을 돌보지 않는 무책임한 남편에 대해 이혼 판결

법률구조 2018-69

담당 : 장세호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등

내용 : 원고(여, 43세)와 피고(남, 47세)는 1995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들(남 23세, 18세, 여 21세)을 두었다. 혼인 초 피고는 원고와 상의도 없이 집 보증금 및 자녀들의 보험을 해지하여 무리하게 가계를 차렸다가 폐업하였다. 이 일로 원고는 파출부 일을 하며 생활비를 벌었지만 역부족이었다. 그러는 사이 피고는 1년에 한두번 정도 집에 찾아올 뿐 경제적 책임은 전혀 지려고 하지 않았다. 현재도 원고는 피고가 진 빚을 갚고 있는 상황이고, 자녀들 역시 학비가 부족해 휴학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화해권고결정 (서울가정법원 2018.6.29.)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양자를 친생자로 출생신고 한 것에 대해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판결

법률구조 2017-368

담당 : 김소이 변호사

사건명 :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내용 : 원고(여, 73세)와 피고(남, 39세)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자 관계로 등재되어 있다. 1992년 원고는 교회에서 소개받은 피고를 입양하고자 하였으나, 피고가 양자라는 이유로 상처를 받을까봐 친생자로 출생신고 하였다. 원고는 오래전부터 뇌졸중을 앓고, 피고가 중학생이 되던 해 남편까지 사망하여 매우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피고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하며 최선을 다하였다. 덕분에 피고는

절단해야 할 뻔 했던 손가락을 치료받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어려운 형편에도 고등학교까지 무사히 학업을 마칠 수 있었다. 그러나 2012년경 피고가 결혼을 한 후 원고와의 관계가 단절되어 현재는 거의 왕래가 끊어진 상태다. 원고는 예전부터 앓고 있던 뇌졸중이 악화되고 치매까지 앓으면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졌다. 이에 주민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자녀로 등재되어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된 피고도 모자관계를 정리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이에 잘못 등재된 모자관계를 바로 잡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18.04.04.)

1.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양육비 지급을 외면하던 부에 대해 과거 및 장래양육비 지급 결정

법률구조 2017-428

담당 : 홍성준 변호사

사건명 : 양육비

내용 : 청구인(여, 42세)과 상대방(남, 48세)은 1997년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1(여, 20세), 사건본인2(남, 16세)를 두었으나, 상대방의 외도 및 폭행으로 2012년 이혼하였다. 이혼 당시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청구인을 지정하였다. 상대방은 건축기사로 일하며 월 300만 원 이상의 수입이 있었으나, 이혼 당시에는 잠시 직업이 없는 상태였다. 이에 취업을 하면 청구인과 협의하여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하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혼 후 4년이 지나도록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급의사를 밝힌 적도 없었다. 청구인은 생산직으로 일하면서 정부의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아,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 사건본인들을 양육했다. 그러나 청구인의 어려운 형편 때문에 사건본인1이 대학에 가지 못할 상황에 처하게 되자, 상대방에게

간곡히 도움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상대방은 청구인의 요청을 거절하였고, 다만 앞으로 사건본인2의 양육비로 월 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사건본인1은 결국 대학교에 입학하지 못했고, 상대방은 사건본인2의 양육비로 월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이에 청구인은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울산가정법원 2018.08.01.)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가. 사건본인들의 과거양육비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사건본인2의 장래양육비로 2018. 8. 2.부터 사건본인2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5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심판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전배우자로 인해 채무가 증대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18-113

담당 : 남기웅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54세)은 1988년경 혼인하였으나 배우자는 가정을 돌보지 않은 채 도박에 빠져 살았고, 폭언과 폭행까지 일삼았다. 그러던 중 배우자는 개인택시를 하겠다며 신청인에게 대출을 받아오도록 강요하였고, 신청인은 강압에 의해 대출 및 사채를 받아주었다. 그러나 배우자는 택시를 담보 삼아 돈을 빌려 사용하였고 임의로 택시를 처분해 버렸으며, 신청인은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본인명으로 있던 주택까지 팔아야만 했다. 재산도 없고 빚마저 발생한 신청인은 더 이상 참고 살 수 없어 2015년경 이혼을 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일용근로를 하며 미성년자인 둘째 자녀와 함께 살았다. 하지만 간헐적으로 하는 일용근로이다

보니 소득이 적었고, 2인 가족이 생활하기에 너무 힘이 들어 신용카드를 사용해야만 하였다. 그렇게 추가적으로 채무가 발생하였지만 신청인이 건강상 문제로 수술을 받게 되면서 노동능력을 상실해 채무상환을 하지 못하였다. 현재 신청인은 아무런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고 자녀에게 의존한 채 생활하고 있다. 이처럼 아무런 소득이 없는 신청인이 3,500만원에 달하는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여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18.10.12.)

채무자를 면책한다.

30년 전 가출하여 연락이 끊긴 아내와의 이혼 판결

법률구조 2018-134

담당 : 남현우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남, 66세)와 피고(여, 55세)는 1986년 8월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딸을 둔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는 1989년경 원고의 고물상 사업이 실패하자 가출하기 시작하였다. 처음 가출 당시에는 5~6개월 수소문 끝에 피고를 찾았지만 피고는 집에 돌아온 지 1주일도 되지 않아 다시 가출해 버렸다. 그 뒤 피고는 가출과 귀가를 반복하다 연락이 두절되었다. 실의에 빠진 원고는 딸을 친정에 맡기고 노숙과 쉼터 생활을 반복하였다. 그러다가 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임대주택을 신청하려고 하였으나 배우자가 있어 심사에서 탈락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2018.09.11.)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경제상황 악화로 채무가 증대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18-153

담당 : 박수열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58세)은 직장생활을 하던 중 IMF금융 위기가 발생하면서 1998년 10월경 퇴사하였다. 이후 계열사에 입사하였지만 급여가 이전보다 30%나 감소하여 생활이 어려웠다. 이에 신청인은 생활비와 교육비를 충당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신용카드를 이용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2003년 1월경 회사 구조조정으로 인해 권고퇴직을 당하였고, 같은 해 3월경 지인의 소개로 경기도 시흥시 소재의 소규모 제조회사에 입사하게 되었다. 급여는 이전의 직장에 비하여 백만 원가량 감소하였지만 신청인은 최선을 다해 일하며 능력 내에서 채무상환을 꾸준히 해나갔다. 그러나 2015년 12월경 경영악화로 인해 신청인은 또 다시 권고퇴직 통보를 받았고, 신청인은 더 이상 직장을 구하지 못해 채무상환을 이어가지 못하였다. 신용불량자가 된 신청인은 현재 국민연금 80만 원과 보험설계사로 일하고 있는 배우자의 수입 50만 원 등 총 월 130만 원으로 4인 가족이 생활하고 있다. 이처럼 경제악화로 인해 7,000만 원에 달하는 채무를 떠안고, 저소득에 시달리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신청인은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18.10.01.)

채무자를 면책한다.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른 미지급 양육비에 대한 이행명령

법률구조 2018-203

담당 : 노경환 변호사

사건명 : 이행명령

내용 : 신청인(여, 23세)과 피신청인(남, 23세)은 2016년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여, 2세)을 두었으나, 2017년

11월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신청인을 지정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로 월 6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협의이혼 하였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7년 11월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말일에 월 6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는 부담조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총 480만 원의 양육비 중 120만 원만을 지급하였고, 이후로는 신청인의 연락을 전혀 받지 않았다. 신청인은 어린 사건본인을 양육하느라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신청인은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미지급된 사건본인의 양육비 360만 원을 지급받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8.30.)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지방법원 2017호협△△△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사건의 2017. 11. 7.자 양육비부담조서에 기한 의무의 이행으로서 미지급 양육비 40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분할하여 2018. 9.부터 8개월간 매월 말일에 각 50만 원씩을 지급하라.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전남편의 직장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법률구조 2018-219

담당 : 윤길현 변호사

사건명 : 양육비 직접지급

내용 : 신청인(여, 38세)과 피신청인(남, 40세)은 2006년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들(여, 11세, 9세, 6세)을 두었으나, 2017년 7월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사건본인들의 공동친권자로 지정하며, 신청인이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기로 하고 협의이혼 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이혼신고 다음날부터 미성년 자녀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1인당 매월 1일에 33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는 부담조서를 작성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간헐적으로 보내온 양육비 144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양육비를 지급하

지 않았다. 이혼 후 신청인은 월 100만 원 남짓 되는 소득으로 사건본인들을 양육하였다. 피신청인은 사건본인들을 보러오지도 않았고 연락도 없었다. 신청인은 홀로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기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 피신청인에게 양육비를 요구한 적이 있지만 그럴 때마다 피신청인은 돈이 없다고 거절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승용차를 구매하여 사용하고, 직장을 다니며 소득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에 신청인은 위 양육비부담조서에 기하여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부산가정법원 2018.07.17.)

채무자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별지 압류채권 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

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1일에 위 채권에서 별지 청구채권목록 기재의 양육비 상당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

조경애 법률구조 1부장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법률구조

법률상담

가사, 민사, 형사, 파산사건 등 법률문제 전반에 걸쳐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면접, 서신 및 전화·지상·순회·인터넷·출장·다문화 가정을 위한 영어상담 등 다양한 상담창구가 개설되어 있다. 직장인을 위한 야간상담도 매주 월요일마다 있다.

화해조정과 소장작성

분쟁해결을 위한 최우선의 방법으로 당사자들과의 대화를 통한 화해조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대서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간단한 소송 관련서류를 무료로 작성해 준다.

소송구조

상담결과 소송이 필요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상담소에서는 무료 소송구조를 제공하고 있다. 무료소송구조는 상담소 소속 변호사와 공익법무관 그리고 자원봉사 변호사들로 구성된 백인 변호사단 소속 변호사들이 수행하고 있으며, 취약계층과 가정폭력피해여성,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계층들을 대상으로 가사소송 전 반은 물론 필요한 경우 민사, 형사 사건까지 포괄하고 있다.

다문화가정을 위한 영어상담

다문화가정의 법률구조를 위하여 외국변호사 자원봉사단을 구성하여 영어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개인파산·면책 및 개인회생 신청 무료 지원

개인신용불량자들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개인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 등의 법적절차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종합민원실 출장상담

서울가정법원 종합민원실에서 무료 출장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교사들을 위한 법 교육 - 교원직무연수

가족법·가정폭력특별법교육과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전국
초·중·고 교원의 전문능력 함양을 돕는 연수 프로그램

- ▶ 연수과정명 : 법 교육 및 폭력예방교육(가정폭력, 아동폭력, 학교폭력)
- ▶ 과정구분 : 전문성향상과정
- ▶ 연수기간 : 2019년 1월 8일(화) ~ 10일(목)
- ▶ 연수기간 : 15시간(1학점, 성적산출 안함)
- ▶ 연수대상 : 서울·전국 초·중·고 교원 40명(선착순 모집)
- ▶ 연수경비(1인당 자비 부담액) : 무료
- ▶ 교과과정

-가족법

가족법 변천사 및 법률구조사 / 약혼·혼인·사실혼에 관한 법률 /
이혼·친권에 관한 법률 / 친자·양자·친양자에 관한 법률 /
부양에 관한 법률 / 성년후견에 관한 법률 /상속·유언·유류분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등록법

가족관계등록부 / 출생신고 / 혼인신고 / 등록부 정정 등

-가정폭력특별법 및 상담사례연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상담사례연구

-임대차 및 채권·채무에 관한 법률

-폭력예방교육의 이론과 실제



2018년 11월 교/육/강/좌

이혼, 현실과 미래 더 생각해보기

부부갈등 및 이혼에 관해 보다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심사숙고함으로써 후회 없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 상담 프로그램

- ▶ 대상 : 결혼생활의 어려움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남녀 (당사자 외 참여불가)
- ▶ 내용 : - 1단계 : 법률상담 및 이혼 관련 비디오 시청
매주 평일 상시
- 2단계 : 집단심리상담
(이혼 전 교육 1단계 참가자, 사전예약 필수)
연중 매월 둘째·넷째 월요일 오후 2시 ~ 4시
(11월 12일, 11월 26일)
- ▶ 강사 : 김명순 소장 (세은심리상담연구소)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김병후 원장과 함께하는 부부갈등과 상처 다루기-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상처받은 관계를 힐링하기 위한 방법을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알아보는 공개강좌

- ▶ 일시 : 2018년 1월 ~ 12월 매월 넷째 목요일 오후 3시 ~ 5시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수시접수 가능)
- ▶ 강사 : 김병후 원장 (정신과 전문의, 김병후정신건강의학과)
- ▶ 강의 일정 및 주제

일시	강 의 제 목
11월 22일	8. 분노 조절 장애
12월 27일	9. 외도에 대한 대처

생활법률강좌

- ▶ 일시 : 연중(요청 시 사전일정 조율)
- ▶ 신청방법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 (전화 또는 메일로 신청)

전문가를 위한 출장 법 교육

1366 상담원, 이주여성 지원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전문상담원에게 필요한 가족관련 법률·가정폭력특별법 등을 강의함으로써 직무전문성을 향상시키는 출장 법 교육

학교현장을 찾아가는 법 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초·중·고교 학생 및 학부모·교사들에게 가족관련 법률 및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는 출장 법 교육

학생들을 위한 법률구조 체험교육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법률구조·가족관련 법률 및 가정폭력특별법 강의를 통해 법률구조 제도에 대한 이해와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는 체험교육

등지교실

내 감정을 잘 느끼고 잘 전달하기 위해 점검하고(See), 해결하며(Solve), 유지할 수 있도록(Sustain) 돕는 교육강좌

- ▶ 일시 : 매월 둘째 목요일 오후 3시 ~ 5시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수시접수 가능)
- ▶ 강의 일정 및 주제

일 정	강 의 제 목	강 사
11월 8일	열등감 : 성장과 변화로 가는 에너지	정윤경 (연세대학교 사회복지 전문대학원 객원교수)
12월 13일	자존감 : '나는 나다'	

※ 일정 및 교육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진행 상 반드시 사전접수 바랍니다.

●장 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8층 강의실(변경될수 있으므로 사전문의 요망) ●교육문의 및 신청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
TEL : 02-782-3601 FAX : 02-780-0485 홈페이지 : www.lawhome.or.kr E-mail : edu@lawhome.or.kr
트위터 : http://www.twitter.com/LegalAidCenter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 ☎ 대표전화 **1644-7077**

이혼, 현실과 미래 더 생각해보기

부부갈등 및 이혼에 관해 보다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심사숙고함으로써 후회 없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 상담 프로그램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김병후 원장과 함께하는 부부갈등과 상처 다루기-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상처받은 관계를 힐링하기 위한 방법을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알아보는 공개강좌

등지교실

내 감정을 잘 느끼고 잘 전달하기 위해 점검하고(See), 해결하며(Solve), 유지할 수 있도록(Sustain) 돕는 교육강좌

생활법률강좌

- 전문가를 위한 출장 법 교육
- 학교현장을 찾아가는 법 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 학생들을 위한 법률구조 체험교육

교사들을 위한 법 교육 - 교원직무연수

가족법 · 가정폭력특별법교육과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전국 초 · 중 · 고 교원의 전문능력 함양을 돕는 연수 프로그램

